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 공산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과거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매트로 인증을 받은 전기장판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열구조 상판에 KCC나 LG모노륨 같은 섬유이외의 것으로 된 구조의 전기장판으로 2006년 당시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매트류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트류와 장판류의 기준이 상이하지만 기존에 안전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매트의 표면온도는 현행규격대로 50℃ 이하로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하는지와 최근 모의고장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전기장판과 매트류의 안전기준은 K60335-2-17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장판의 표면온도는 안전인증기준 11절 온도상승 기준에 제품의 표면이 섬유이외의 제품은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귀 사는 표면온도를 50℃ 이하로 생산 판매하여야 합니다.

귀 사가 2006년도 안전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할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모의고장 시험은 귀 사에서 안전인증기준 19.109절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전기그라인더가 안전인증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K60745-2-3-3(전기그라인더 및 포리셔)의 18.103절 : 그라인더는 오직 하나의 정격 무부하 속도만을 가져야 함. 2006년에 발행된 IEC60745-2-3 '19.107절: 55mm 이상의 정격 용량(디스크 지름)을 가진 그라인더는 오직 하나의 정격 속도를 가져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지름이 100㎜이고 11000/min(max)속도 조절이 가능한 그라인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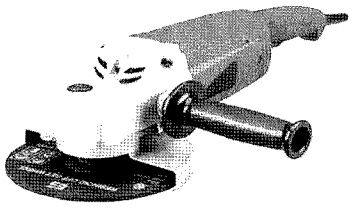

Answer 그라인더는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안전기전기준 K60745-2-3에서 전기그라인더의 속도를 하나의 정격 무부하속도로 규정한 이유는, 전기그라인더가 여러 개의 속도를 선택 스위치로 단계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특정 단계에 맞는 부속품(예: 휠 등)이 다른 단계의 속도에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이얼타입의 전기그라인더는 '단계별 속도가 아닌 하나의 최대속도까지 다이얼로 천천히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의 제품이기 때문에, 동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정격 무부하속도만을 지닌 제품' 으로 볼 수 있어, 동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명판에 동 제품의 최대속도(11000rpm)를 표기하고 , 매뉴얼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속도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실내 냄새제거에 사용되는 아로마트는 안전인증대상 품목인가요?

당사의 아로마트는 전원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냄새 감지센서의 레벨에 따라 4단계에 걸쳐 음이온양과 팬(풍량)이 조절되어 냄새를 산화시킵니다.

- *음이온 TR에서 1500V ~ 4500V(4단계)로 변환되어 방전관 표면에 연면방전으로 음이온량이 4단계로 발생됨*
- *팬이 4단계 조절되어 풍량이 변환됨*
- *만약 음이온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 O_3센서에 감지되어 음이온 발생은 정지되고 팬만 작동되며,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음이온이 재발생 됨.*

위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온발생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면 방전 방식 음이온에 의한 산화로 화장실이나 건물 내의 냄새를 제거하는 아로마트(aeromat)가 전기적 집진장치나 기계적 집진장치 또는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는 필터(활성탄 필터 등)가 없이 단순히 음이온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2-509-7246)로 문의바랍니다.

Question 물휴지 안전인증번호 및 표시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인증번호가 1234인 제품과 동일한 부직포 재질과 용도로 시판브랜드명이 A, B, C, D 등으로 생산될 경우 인증번호 및 모델명 부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물휴지(물티슈)는 「품공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해규칙 제2조제1항 및 제8조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외국제조자(대리인 포함)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입니다. 또한 물휴지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8(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3호)에 의한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부직포의 재질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모델의 구분이 같은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안전인증번호와 동일한 모델명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 신청 시 "A"라는 모델명으로 신청한 후,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제품을 새로이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동 제품의 안전인증표시상의 모델명도 기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A"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학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 궁금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학용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44」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학용품' 이란 "학용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품공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 ·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풀에 한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증정 또는 홍보 제품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정, 기증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증정, 기증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도 해당 제품의 구조 · 재질 및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품공법」 제19조에 의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성 시험 · 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꼭 필요한가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등과 같은 표시사항에 대해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판매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품공법」 제22조) 또한,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안전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정확한 시험 · 검사없이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등과 같은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품공법」 제39조제8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인시험 · 검사기관 또는 자체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